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중 개정 학칙

1.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

가. 교과목 학점당 시간 설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함 (제35조)

나. 인공지능대학 인공지능학과 학사학위명을 변경함 (제50조제1항 별표2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학과명	인공지능학과	(좌동)	• 기졸업생 없음 • 재적생 동의 완료
학위종별	인공지능학사	공학사	

2. 개정 학칙

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 중 “한다.”를 “하며,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”로 한다.

제50조제1항 중 “별표 2”를 첨부와 같이 한다.

부칙(2023. 8. 23. 개정)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중 개정 학칙 신·구조문 대비표

구	신	개정사유및내용
제35조(학점) 교과과정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,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	제35조(학점) …… …… 하며,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*학점당 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
제50조(졸업) ① 이 학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(서식 제1호 및 제2호)의 증서에 의하여 별표 2 학사학위를 수여한다. 다만, 스크랜튼학부 자유전공 입학생의 학사학위는 제1전공의 학사학위로 한다. ②~⑤ (생략)	제50조(졸업) ① …… …… …… ……별표 2…… …… …… ②~⑤ (현행과 같음) 부칙(2023. 8. 23. 개정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*인공지능대학 인공지능학과 학위명 변경 반영

구

[별표 2] 학사학위의 종류(제50조 관련)

대학	학위의 종류	학과 또는 전공
(생략)		
인공지능대학	인공지능학사 데이터사이언스학사	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
(생략)		

신

[별표 2] 학사학위의 종류(제50조 관련)

대학	학위의 종류	학과 또는 전공
(현행과 같음)		
…… ……	공학사 ……	…… ……
(현행과 같음)		